

수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563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전용우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D에게,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20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 8. 30. 접수 제212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308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7. 1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2082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이어 같은 등기소 2019. 8. 30. 접수 제21289호로 같은 일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9. 11. 1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308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 제1, 2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는 날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4. 7. 14. 체결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달리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제1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백히 다르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9.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별 지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제지하층 호 46.80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전 209 ㎡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09 분의 34.82

- 이 상 -